

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2. 12) 상정

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2. 1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옴부즈만 강진석)

가. 제안이유

○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

○ 옴부즈만의 낮은 처우 및 7시간 근무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지급 기준을 변경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시민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보수산정기준을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, 기말수당, 정근수당 이외에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가계지원비를 포함하여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.(안 제3조제2호)

○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게 정함.
(안 제17조제3항)

○ 시민 옴부즈만의 연가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와 같도록 정함.(안 제19조의2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공무원 근무시간 같이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인가?	○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실시
○ 제3조 보수산정 기준으로 할 때 연봉 총액은?	○ 약 3,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음.
○ 의회 차원의 민원 및 의원 민원 사항에 대하여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근무방법 등의 변화가 요구 됨.	○ 동 단위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을 상담하고 찾아서 일을 하는 생산적인 옴부즈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55호
의결 년월일	2005. 12. 23 (제123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18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 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
- 옴부즈만의 낮은 처우 및 7시간 근무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지급기준을 변경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시민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보수산정기준을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, 기말수당, 정근수당 이외에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가계지원비를 포함하여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.(안 제3조제2호)
- 나.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게 정함.
(안 제17조제3항)
- 다. 시민옴부즈만의 연가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같도록 정함.(안 제19조의2 신설)

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” 를 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3조제2호 단서외의 부분중 “봉급, 기말수당, 정근수당의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”를 “봉급,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의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”로 하고,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은 「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휴가의 종류) 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연가 및 병가) ①시민옴부즈만의 연가는 「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같다.

②시민옴부즈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제1조중 “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제11조제1항중 “부천시여비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여비 조례」”로, “국외여비규정”을 “「국외여비 규정」”으로 하며, 제18조중 “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「부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제20조제1호중 “병역법”을 “「병역법」”으로 하며, 제24조제3항중 “부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”을 “「부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」”으로 하고, 제25조중 “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 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 관한 조례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보수산정기준”이라 함은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, 기말수당, 정근수당의 연간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단, 천단위 숫자까지로 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17조(근무일 및 근무시간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<u>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는 지정되어 있는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</u></p> <p>2. <u>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</u></p> <p>제19조(휴가) ① <u>시민옴부즈만의 휴가</u></p>	<p>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봉급,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의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단서 삭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근무일 및 근무시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은 「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9조(휴가의 종류) <u>시민옴부즈만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는 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</p> <p>②연가는 연 11일로 한다.</p> <p>③시민옴부즈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. 단,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20조(공가) 시민옴부즈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	<p>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</p> <p>제19조의2(연가 및 병가) ①시민옴부즈만의 연가는 「부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같다.</p> <p>②시민옴부즈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0조(공가)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